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21일, 박춘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춘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안 제54조제1항)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54조제7항)
-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규정(안 제54조의2)
-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 규정(안 제54조의3)

- 방청 제한 고지 규정(안 제90조제5항 신설)
- 의회 방청 준수사항 조정(안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 토 보 고 서

1. 규칙안 개요

- 제안자 : 박춘희 의원
- 제안일자 : 2025. 5. 21.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한 명확화(안 제54조제1항)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54조제7항)
-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 규정(안 제54조의2)
-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 규정(안 제54조의3)
- 방청 제한 고지 규정(안 제90조제5항 신설)
- 의회 방청 준수사항 조정(안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 삭제)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84조에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나. 입법의 취지

- 군의회 의사 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청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마련하여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4조(배부 및 공개)에서 임시회 및 정례회 종료일부터 30일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시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공개를 도모함.
- 안 제5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에서 회의 중계 대상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서 영상회의록의 공개기한 및 공개대상을 규정함.
- 안 제90조(출입 및 방청제한)에서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마련하여 방청 제한 시 제한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함.
- 안 제91조(준수사항)에서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및 신문 등 서적류를 읽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 의회 방청환경을 조성함.
- 안 제92조(중계방송 등)에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단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5. 종합검토의견

- 군의회 의사에 관한 회의록 및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 ③ (생략)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불임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불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불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2024. 9.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는 [불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에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 해당 부서로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수신자 광역의회, 기초의회(시군의회), 기초의회(구의회)



주무관 김민주 경제제도개선 과장 최상근 권익개선정책 전달 2024. 8. 5.
국장 민성실

협조자

시행 경제제도개선과-1979 (2024. 8. 5.) 접수 의회사무과-3084 (2024. 8. 5.)

주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34 팩스번호 044-200-7922 / bullock@korea.kr / 대국민 공개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6.3.-7.31.)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431
----------	-----

발의 연월일 : 2025년 5월 21일
발의자 박춘희 의원
찬성자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 군의회 의사공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제시 (안 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나.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안 제54조제7항 신설)

다. 실시간 중계 근거를 신설하며 중계 대상 규정 마련 (안 제54조의2 신설)

라.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및 공개 기한 등을 규정 (안 제54조의3 신설)

마.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제시를 위한 방청 제한 고지 규정 마련

(안 제90조제5항 신설)

바. 주민친화 및 탈권위적인 의회 방청 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사항 조정

(안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 삭제)

사. 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조문 제목 및 내용 일부 조정(안 제92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홍보 및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을 포함해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9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1조제1항의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92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음·녹화 등”

제9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삭제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군청출입기자로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같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② 삭 제</p> <p>③ ~ ⑥ (생략)</p> <p><신 설></p>	<p>제54조(배부 및 공개) ①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p>
<p><신 설></p>	<p>제5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p> <p>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p>

③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홍보 및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을 포함해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5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90조(출입 및 방청 제한) ① ~
④ (생략)

<신 설>

제90조(출입 및 방청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

	<u>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u>
제91조(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방 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1조(준수사항)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 는 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공개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정한다)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 다.	제92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군청 출입기자로 한정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 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
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
음·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
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
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
다.

⑤ 의장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
계방송 할 수 있다.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박춘희의원
연락처	(033) 330 -2502